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420
------	------

2023.11.2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11.24.) 상정, 질의 및 답변, 보류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11.28.)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서울핀테크랩 운영’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서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서울핀테크랩 운영

나. 위탁기간 : 2년8개월 (2024.4.~2026.12.)

다. 소요예산 : 1,704백만원('23년 기준)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연장평가, 시설 및 장비 운영, 안전관리
- 전문 멘토링, 특화 교육 프로그램,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금융사 등 유관기관 네트워킹
- 해외 투자설명회(IR),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로 입주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운영, 지정 사례 공유회 개최

- 데모데이 개최, 밋업 진행 등 투자유치 지원
- 민간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핀테크 허브’ 구축
-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위원회 지원 정책 협력 등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서울핀테크랩을 관리하고 입주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핀테크랩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4월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근거하여 재위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서울핀테크랩 조성 및 운영 현황

- 서울핀테크랩(이하 “핀테크랩”)은 국내 핀테크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서울의 핀테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임.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핀테크랩 현황 >

- 위치: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위워크 여의도점 4, 5, 6, 8, 17, 19층
- 규모: 총 11,673㎡
- 입주현황: 입주 80개사, 멤버십 30개사(2023.11.13. 기준)
- 위탁기관: 그라운드업벤처스 주식회사(22.4.23.~24.04.22.)
- 주요사무
 - ▶ 입주기업 모집·선정·관리(이용료 징수) 및 졸업기업 사후관리, 홍보
 - ▶ 입주기업 맞춤형 교육·멘토링, 투자유치(데모데이·밋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 ▶ 해외진출 지원(해외 AC 연계 프로그램, 해외 핀테크 전시회·IR 참여 등)
 - ▶ 국내·외 핀테크 기업, 금융사, 투자사, 공공기관 등 협업사업 추진
 - ▶ 핀테크 오픈이노베이션,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턴십 지원 사업 등
 - ▶ 기타 핀테크 기업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
- 2023년도 예산: 7,904백만원(민간위탁금 1,704백만원, 임대료 등 6,200백만원)
- 공간구성: 입주기업·멤버스 오피스(111), 회의실(17), 교육장(1), 공용공간(65)

- 핀테크랩은 지난 2018년 4월에 마포 창업허브에 최초 개관한 이후 운영 확대를 위해 여의도 제2핀테크랩 개관(2019.7.)이 이루어짐.
- 이후 두 핀테크랩의 통합운영(2019.10.)과 확대 개관(2020.11.)을 통해 현재 여의도 위워크 6개층에 총 100개사가 입주 가능한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 육성 공간이 조성됨.

< 서울핀테크랩 추진 경위 >

-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투자유치과-5961, 행정1부시장 방침) : 2017.10.
- 서울핀테크랩 최초 개관(마포 서울창업허브, 14개사) : 2018.4.
- 서울핀테크랩 추가 개관(여의도 위워크 6층, 16개사) : 2019.7.
- 서울핀테크랩 통합 개관(여의도 위워크 4·5·6·8층, 70개사) : 2019.10.
- 서울핀테크랩 확대 개관(여의도 위워크 4·5·6·8·17·19층, 96개사) : 2020.11.

- 핀테크랩은 개관 이후 2년간 용역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2020.4.)하여 운영 중이며, 1차례 위탁업체가 변경(재위탁)된 바 있음.

< 서울핀테크랩 민간위탁 현황 >

계약기간	수탁기관	협약 방식
2018.04.~2018.12.	(주)엘스톤	용역
2019.04.~2020.04.	(주)케이엑셀러레이터	용역
2020.04.~2022.04.	(주)케이엑셀러레이터,(주)팀위 (컨소시엄)	민간위탁
2022.04.~2024.04.	(주)그라운드업벤처스	민간위탁(재위탁)

- 핀테크랩은 ‘2022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공동관 운영과 런던·싱가포르 등 현지 IR을 개최하는 등 해외진출과 투자유치의 지원, 금융규제 혁신, 피노베이션 챌린지와 공동 데모데이 등 전통적 금융기관과의 협업 등 다수의 성과를 내고 있음.
- 최근 5년간 핀테크랩 보육 실적은 누적 매출액 3,800억원, 투자유치 2,747억원, 신규고용 2,579명 등으로 입주사 평균 매출액²⁾도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핀테크랩 보육 실적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입주기업(개사)	14	58	104	137	138	228(순계)
매출액(억원)	33	276	700	1,199	1,592	3,800
투자유치(억원)	51	308	617	1,043	728	2,747
신규 고용 (명)	61	125	725	843	825	2,579

다. 민간위탁의 재위탁 타당성 여부

- 서울시는 핀테크랩의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연장 평가, 시설 운영, 안전관리, ▶입주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 등 전반적 시설 및 입주기업 관리에 대한 사무를 재위탁(2024.4.~2026.12.) 하고자 함.

2) 입주기업 1개사 평균 매출액: ▶2018년 2.4억원, ▶2019년 4.8억원(2.4억원↑), ▶2020년 6.7억원(1.9억원↑), ▶2021년 6.8억원(0.1억원↑), ▶2022년 11.7억원(4.9억원↑)

- 서울시는 현재 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 스타트업 투자 감소에 따른 입주사 투자유치액 보완대책 마련, ②급변하는 핀테크 규제환경과 업계 트렌드의 반영, ③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관리 등 역량 검증 강화로 핀테크랩의 성장기조를 이어가고자 하나, 현재 수탁기관은 핵심역량 미흡으로 재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서울시 자체조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 ▶ 매출액·투자유치액·고용 창출 성과에 대한 성과 측정의 세밀한 분석모델 개발 및 전략 고도화 미흡,
-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관리 및 운영 전문성 부족,
- ▶ 핵심지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집행률 상향 노력 필요 등임

- 이와 같이 현재의 민간위탁은 핵심역량 3개 분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고, 총점도 반드시 재위탁 대상이 되는 75점에 근접한 77점에 불과한바,

해당 지적사항이 심사 감점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재위탁기관 선정시 기관 역량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요구됨.

- 또한 핀테크랩은 핀테크 산업 분야에 높은 잠재성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선별 및 전문적 보육, 관련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핀테크 규제 혁신과 각종 전통 금융기관과의 협업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2020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수탁기관이 2년마다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핀테크랩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시 전문성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축적하고 안정적으로 핀테크 기업 지원과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20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핀테크랩 운영'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서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나.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서울핀테크랩 운영
- 나. 위탁기간 : 2년8개월 (2024.4.~2026.12.)
- 다. 소요예산 : 1,704백만원('23년 기준)
-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내용

-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모집 및 선발·연장평가, 시설 및 장비 운영, 안전관리
- 전문 멘토링, 특화 교육 프로그램,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금융사 등 유관기관 네트워킹
- 해외 투자설명회(IR),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로 입주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금융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 운영, 지정 사례 공유회 개최
- 데모데이 개최, 밋업 진행 등 투자유치 지원
- 민간 지원기관 협업을 통한 '핀테크 허브' 구축
-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위원회 지원 정책 협력 등

바.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서울핀테크랩을 관리하고 입주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이루다 (☎ 2133-5249)